

2023년도 문화재위원회

제11차 중능문화재분과 위원회 회의자료

- ▣ 회의일시 : 2023. 11. 21. (화요일), 14:00 ~
-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 안 건 : 총 17건(심의 14건, 보고 3건)

목 차

【심의사항】

- | | |
|----|--|
| 1 | 덕수궁 등 주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건설 |
| 2 | 서울 숭례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
| 3 | 서울 태릉과 강릉 주변 철도미니어처 전시관 증축 |
| 4 | 양주 온릉 주변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종묘배양장) 신축 |
| 5 | 양주 온릉 주변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종묘배양장) 신축 |
| 6 | 고양 서오릉 주변 야영장 시설 신축(허가변경) |
| 7 | 남양주 영빈묘 주변 생활체육시설 부지조성 및 건축물 신축 |
| 8 | 남양주 사릉 주변 창고시설 신축 (8건) |
| 9 | 남양주 성묘 주변 단독주택 부지조성 및 신축공사 |
| 10 | (사적)화성 용릉과 건릉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
| 11 | (사적)파주 장릉 외3개소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
| 12 | (사적)양주 온릉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
| 13 | (사적)여주 영릉과 영릉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
| 14 | 경복궁 장소사용허가(2023 서울라이트 광화문 빛축제) |

【검토사항】

【보고사항】

- | | |
|---|----------------------------|
| 1 | 효종 영릉 향어로 및 주변 복원정비공사 |
| 2 | 창경궁관리소 근로자 휴게실(가설 컨테이너) 설치 |
| 3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처리 보고 |

심 의 사 항

【 심의사항 】

안건번호 공능 2023-11-01

1. 사적 덕수궁 등 주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건설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사적 「덕수궁」 및 국보 「서울 송례문」 주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용산~상봉) 건설사업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사적 덕수궁 및 국보 송례문 주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건설을 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23년 9월, 9차 공능문화재분과위원회 보류(사유 : 신청한 노선 선형의 불가피성, 대안 노선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제시하고 소음, 진동에 관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료 보완)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

(2) 대상문화재명 : 서울 송례문(국보), 덕수궁(사적)

- 소재지 : (덕수궁) 서울 중구 세종대로 99(정동)
(송례문) 서울 중구 세종대로 40(남대문로4가)

(3) 신청내용

- 위치 :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자동~성동구 상왕십리동 일원
(덕수궁 문화재구역에서 62m/송례문 문화재구역에서 88.2m 이격)
 - 덕수궁 허용기준 1구역(개별심의) 및 3구역(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송례문 허용기준 1구역(원지형보존) 및 3구역(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사업내용
 - 총연장 : 제2공구 5.76km (GTX-B노선 용산~상봉간 19.9km)
 - 사업기간 : 2023.01.16.~2024.03.15.
 - 구조물 : 터널 5.56km / 서울역(정거장) 0.20km / 환기구 2개소
 - 부설심도 : 지하 50m~90m

2. 서울 숭례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국보 「서울 숭례문」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울 숭례문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서울 숭례문(국보)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29
- (3) 신청내용
 - 위치 : 서울특별시 중국 남대문시장길 12일대
 - 사업내용
 - 허용기준 2구역 일부 3구역으로 조정
 - 조정된 허용기준 작성 지침에 따른 공통사항 내용 수정

구분	허용기준(문화재청 고시 제2010-113호, 2010.11.03)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 원지형 보존
2구역	· 최고높이 11m(3층) 이하 · 최고높이 15m(3층) 이하
3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명함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 사항	· 명함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 문화재와 조화되는 영도와 재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지붕 색상-회색, 밤색 등). 흰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노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경사지를 성·결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구분	허용기준 (적색·표기수정, 청색·추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2구역	· 최고높이 11m이하 · 최고높이 15m 이하
3구역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별표2에 따른 문화재 주변 건축물 높이에 따름).
공통 사항	·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측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 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등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이상의 법면,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 단, 3구역은 제외함. (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3. 사적 서울 태릉과 강릉 주변 철도미니어처 전시관 증축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소재 사적 「서울 태릉과 강릉」 주변 철도미니어처 전시관 증축을 위하여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사적 서울 태릉과 강릉 주변 철도미니어처 전시관(노원기차마을) 증축을 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20.3월 허가사항 중 일부만 건축 후 증축을 위하여 재신청한 사항임

<추진현황>

- '20.03. : 문화재현상변경 승인
- '21.10. : 건축공사 착공
- '22.05. : 건축공사 준공(05.31.)
- '22.11. : 노원기차마을1관(스위스관) 개관(11.18.)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서울 태릉과 강릉(사적)
 - 소재지 :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681
- (3) 신청내용
 - 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29-53번지 일대
(서울 태릉과 강릉 문화재구역에서 90m 이격)
 - 서울 태릉과 강릉 허용기준 1구역(보존구역)
 - 사업내용 : 화랑대공원 내 기차마을 증축

	기허가사항	건축현황	금회 증축안	증감
대지면적	2,350㎡	2,350㎡	2,350㎡	-
연면적	548㎡	444.71㎡	1,244.51㎡	증799.8㎡
건축면적	548㎡	395.26㎡	795.16㎡	증399.9㎡
최고높이	7.8m	7.7m	10m	증2.3m
건축규모	1층	2층*	2층	-

※ 2층 부분은 49㎡로 별도 층이라기 보다는, 건물내부의 작은 전망대 형태임)

4. 양주 온릉 주변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종묘배양장) 신축

가. 제안사항

경기도 소재 사적 「양주 온릉」 주변 종묘배양장 신축을 위하여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양주 온릉 주변에 종묘배양장을 신축 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23년 8차 공능문화재분과 위원회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양주 온릉(사적)
 - 소재지 : 경기 양주시 장흥면 호국로 255-41 (일영리)
- (3) 신청내용
 - 위치 :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일영리 14-35번지(문화재구역과 연결)
 - 허용기준 1구역(개별심의)
 - 사업내용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종묘배양장) 신축
 - 대지면적 : 990m²
 - 건축(연면적) : 164.7m²(164.7m²)
 - 건축규모 : 1개동, 지상1층
 - 건축구조 : 일반철골구조
 - 최고높이 : 4.5m
 - 부지조성 : 잡석포장 525m²
- (4) 신청인 의견 : 없음

5. 양주 온릉 주변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종묘배양장) 신축

가. 제안사항

경기도 소재 사적 「양주 온릉」 주변 종묘배양장 신축을 위하여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양주 온릉 주변에 종묘배양장을 신축 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23년 8차 공능문화재분과 위원회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양주 온릉(사적)
 - 소재지 : 경기 양주시 장흥면 호국로 255-41 (일영리)
- (3) 신청내용
 - 위치 :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일영리 14-3번지(문화재구역과 연결)
 - 허용기준 1구역(개별심의)
 - 사업내용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종묘배양장) 신축
 - 대지면적 : 991m²
 - 건축(연면적) : 165.6m²(165.6m²)
 - 건축규모 : 1개동, 지상1층
 - 건축구조 : 일반철골구조
 - 최고높이 : 4.41m
 - 부지조성 : 잡석포장 763m²
- (4) 신청인 의견 : 없음

6. 고양 서오릉 주변 야영장 시설 신축(허가변경)

가. 제안사항

경기도 고양시 소재 국가지정문화재 「고양 서오릉」(사적) 주변 야영장 시설 신축을 위하여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고양 서오릉 주변에 야영장 시설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20년 사적분과 9차 소위원회('20.11.25.) 부결 :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 '21년 공능분과 4차 위원회('21.08.17.) 부결 :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 '22년 공능분과 2차 위원회('22.03.15.) 조건부가결
: 식재 및 보행자 동선은 전문가 자문을 받을 것(22.5.16. 소현수 위원 검토 완료)
 - '23년 공능분과 10차 위원회('23.10.17.) 보류 : 설계도면 등 자료 보완 후 재심의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고양 서오릉(사적)
 -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서오릉로 334-92
- (3) 신청내용<야영장 시설 신축>
 - 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432-458(문화재구역에서 140m 이격)
 - 허용기준 1구역(개별심의)
 - 사업내용 : 건물 1동 신축, 야영장 시설 신축(허가변경)

구분	1차('20.11.25./부결)	2차('21.08.17./부결)	3차('22.03.15./조건부가결)	4차('23.10.17./보류)	금회(안)	비고
대지면적	2,670㎡	좌동	좌동	좌동	좌동	
건축(연)면적	145.73㎡ (177.08㎡)	154.86㎡ (154.86㎡)	98.4㎡ (98.4㎡)	107.91㎡ (172.31㎡)	121.71㎡ (148.22㎡)	
건물높이	8.5m (평지붕)	5.0m (경사지붕)	5.5m (경사지붕)	8.0m(경사지붕)	6.9m(경사지붕)	
건축규모	지상2층, 1동, 철골조	지상1층, 1동, 철골조	지상1층, 1동, 철골조	지상2층, 1동, 철골조	지상2층, 1동, 철골조	
부지조성	최대 절토높이 약5m	최대 절토 약3.5m 콘크리트포장 (T=200mm) : 546㎡	최대 절토: 약3.2m 절토량: 160㎡ 콘크리트포장 (T=200mm):546㎡ 콘크리트옹벽 (H=0~3m): 68.3m	최대절토:좌동 절토량: 237.12㎡ 콘크리트포장 (T=200mm):268㎡ 콘크리트옹벽 0m	좌동	
야영장 부지	부지면적: 798.92㎡	부지면적: 좌동, 테크(5×3) 11개소, 수목 82주 별채	부지면적1,340㎡ 수목 식재: 188본 * 수목식재 1,298주로 조건부 검토 변경	부지면적:좌동 수목식재: 1298주	좌동	-

7. 남양주 영빈묘 주변 생활체육시설 부지조성 및 건축물 신축

가. 제안사항

경기도 소재 사적 「남양주 영빈묘」 주변 생활체육시설(실내배드민턴장) 부지 조성 및 건축물 신축을 위하여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남양주 영빈묘 주변에 생활체육시설 부지를 조성하고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23년 7월, 공능문화재분과 위원회 부결(사유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 '23년 8월, 공능문화재분과 위원회 부결(사유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남양주 영빈묘(사적)
 - 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175번지
- (3) 신청내용
 -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산25-16
(문화재구역에서 179m 이격, 1구역)
 - 사업내용 : 생활체육시설(실내배드민턴장) 부지조성 및 건축물 신축

구분	'23.7월 심의: 부결	'23.8월 심의: 부결	금회 신청사항	비고
부지면적	2,600㎡	2,300㎡	좌동	
건축면적 /연면적	807.53㎡/807.53㎡ (가동: 779.40㎡, 나동: 28.13㎡)	좌동	717.53㎡/717.53㎡ (가동: 689.40㎡, 나동: 28.13㎡)	90㎡ 감소
건축규모, 건축구조	지상 1층, 2개동, 경량철골조	좌동	좌동	
최고높이	9.8m(원형지붕)	8.5m(경사지붕)	좌동	
옹벽	113m(H:1.0~3.0m) 조경식생블럭 1단설치 및 부분조경식재	247m(H:2.0~3.0m) 조경식생블럭 2단설치 및 전면조경식재	좌동	
성토량/절토량	1,476㎡/1,808㎡	1,448㎡/1,040㎡	좌동	
주차계획 및 배치, 코트 수	주차대수 : 16대, 5코트	주차대수 : 14대, 샤워실 이동, 5코트	주차대수 : 22대, 4코트	주차 8대 증가, 1코트 감소

8. 남양주 사릉 주변 창고시설 신축 (8건)

가. 제안사항

경기도 소재 사적 「남양주 사릉」 주변 창고시설 신축을 위하여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남양주 사릉 주변에 창고시설(8건)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21.12.21. 공능분과 위원회 보류(사유: 건축적 적정성 검토를 위한 추가자료 보완)
 - '22.3.15. 공능분과 위원회 부결(사유: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과도한 건물 높이)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외 7인
- (2) 대상문화재명 : 남양주 사릉(사적)
 - 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사릉로 180
- (3) 신청내용
 -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172-56일원(문화재구역에서 190~224m 이격)
 - 허용기준 2구역(평지붕 5m 이하, 경사지붕 7.5m 이하)
 - 사업내용 : 창고시설 신축

구분	'21.12월 심의: 보류	'22.3월 심의: 부결	금회 신청사항	비고
건축면적	420~2,015㎡	좌동	563~1,837㎡	3개동 최초보다 축소,
연면적	840~4,040㎡	좌동	915~3,674㎡	나머지동 기존과 동일
최고높이	평지붕 10m	좌동	경사지붕 10m	평지붕 → 경사지붕
건축규모	지하1층/지상2층 (24개동)	좌동	지하1층/지상2층 (8개동)	
건축물용도	창고	좌동	좌동	
건축구조	철골구조	좌동	좌동	

9. 남양주 성묘 주변 단독주택 부지조성 및 신축공사

가. 제안사항

경기도 소재 사적 「남양주 성묘」 주변 단독주택 부지조성 및 신축공사를 위하여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남양주 성묘 주변에 단독주택 부지조성 및 신축공사를 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남양주 성묘(사적)
 - 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송능리 312-8
- (3) 신청내용
 -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송능리 산52-3번지 (문화재구역에서 306m 이격)
 - 허용기준 1구역(개별심의)
 - 사업내용 : 단독주택 부지조성(석축, 옹벽, 교량) 및 신축공사
 - 대지면적 : 563㎡
 - 건축면적/연면적 : 105.58㎡/170.48㎡
 - 건축규모/최고높이 : 지상2층 (철근콘크리트조) / 7.5m
 - 성토량 : 81㎡
 - 석축 : H=0.5m ~ 3.4m, L=72.5m
 - 역L형옹벽 : H=0.5m ~ 1.5m, L=48.0m
 - 교량 : H=5.5m, W= 6.0m, L=8.0m

10. (사적) 화성 용릉과 건릉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경기도 화성시 소재 사적 「화성 용릉과 건릉」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화성 용릉과 건릉」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

(2) 대상문화재 : 화성 용릉과 건릉(사적)

(3) 신청내용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 주요내용

- 허용기준 구역 및 도면 변경사항 없음

- 천연기념물(개비자나무) 통합 고시

- 조정사항

* 표준 준용하여 일부 문구 수정

* 허용기준 작성지침 [별표3] 허용기준 공통사항 적용하여 공통사항 추가

* 행정편의를 고려한 일부 공통사항 추가 및 삭제

○ 현행(문화재청 고시 제2017-94호, 2017. 08. 16.)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3구역	-	○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4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5m이하	
5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4m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8m이하	
6구역	○ 기 승인된 태안3지구 택지개발 변경시 별도 심의		
7구역	○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8구역	○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제120호 용주사 동종)와 시도지정문화재(문화재자료 제35호 용주사대웅보전, 문화재자료 제36호 용주사천보루)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한 허가 세부절차 준용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소음·진동 등을 유발 하거나 대기 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심의함. ○ 지하 50m 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범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 32m이상 건축물은 개별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도시계획 변경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조 정 안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2구역	○ 최고높이 8m이하	○ 최고높이 12m이하	
3구역		○ 최고높이 12m이하	
4구역	○ 최고높이 11m이하	○ 최고높이 15m이하	
5구역	○ 최고높이 14m이하	○ 최고높이 18m이하	
6구역	○ 기 승인된 태안3지구 택지개발 변경시 개별검토		
7구역	○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8구역	○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제120호 용주사 동종, 보물 제1942호 용주사 대웅보전)와 시도지정문화재(문화재자료 제36호 용주사 천보루)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한 허가 세부절차 준용		
공통사항	<p>○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보수 허용.</p> <p>○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p> <p>○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 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p> <p>○ 소음·진동·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확물질·먼지·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 검토함.</p> <p>○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p> <p>○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p> <p>○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이하인 경우에 한함.</p> <p>○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p> <p>○ 지하 50m 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 검토함.</p> <p>○ 높이 3m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p> <p>○ 수목의 제거(고시목·피해목 제외) 또는 3,000㎡ 이상의 식재는 개별 검토함.</p>		

11. (사적)파주 장릉 외 3개소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경기도 소재 사적 「파주 장릉, 파주 삼릉, 파주 소령원/수길원」 주변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파주 장릉, 파주 삼릉, 파주 소령원/수길원」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

(2) 대상문화재 : 파주 장릉(사적), 파주 삼릉(사적), 파주 소령원/수길원(사적)

(3) 신청내용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 주요내용

- 허용기준 구역 및 도면 변경사항 없음

- 조정사항

* 표준 준용하여 일부 문구 수정

* 허용기준 작성지침 [별표3] 허용기준 공통사항 적용하여 공통사항 추가

* 행정편의를 고려한 일부 공통사항 추가 및 삭제

○ 파주 장릉 현행(문화재청 고시 제2017-94호, 2017. 8. 16.)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3구역	○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4구역	○ 시도지정문화재(기념물 제139호 정연묘역) 허용기준 준용		
공통 사항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 32m이상 건축물은 개별심의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도시계획 변경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파주 장릉 조정안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2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4구역	○ 시도지정문화재(기념물 제139호 정연묘역) 허용기준 준용		
공통 사항	○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소음·진동·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검토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 지하 50m이상의 굴착 행위 시 개별 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이상으로 양쪽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수목의 제거(고사목·피해목 제외) 또는 3,000㎡ 이상의 식재는 개별 검토함.		

○ 파주 삼릉 현행(문화재청 고시 제2017-69호, 2017. 5. 8.)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3구역	○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노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 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파주 삼릉 조정안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2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기타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소음·진동·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 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지하 50m이상의 굴착 행위 시 개별 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이상으로 양쪽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수목의 제거(고사목·피해목 제외) 또는 3,000㎡ 이상의 식재는 개별 검토함.		

○ 파주 소령원/수길원 현행(문화재청 고시 제2017-11호, 2017. 1. 19.)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노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파주 소령원/수길원 조정안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2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소음·진동·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지하 50m이상의 굴착 행위 시 개별 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이상으로 양쪽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수목의 제거(고사목·피해목 제외) 또는 3,000㎡ 이상의 식재는 개별 검토함 		

12. 양주 온릉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경기도 양주시 소재 사적 「양주 온릉」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양주 온릉」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양주 온릉(사적)
- (3) 신청내용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 주요내용
 - 허용기준 구역 및 도면 변경사항 없음
 - 조정사항
 - * 표준 준용하여 일부 문구 수정
 - * 허용기준 작성지침 [별표3] '허용기준 공통사항' 적용하여 공통사항 추가
 - * 행정편의를 고려한 일부 공통사항 추가 및 삭제

○ 양주 온릉 현행(문화재청 고시 제2017-11호, 2017. 1. 19.)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1m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5m이하	
4구역	○ 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은 기본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소음·진동 등을 유발 하거나 대기 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심의함. ○ 지하 50m 이상의 굴착행위 시 개별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도시계획 변경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양주 온릉 조정안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2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 최고높이 11m 이하	○ 최고높이 15m 이하	
4구역	○ 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소음·진동·악취 등을 유발 하거나 대기 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 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 검토함. ○ 지하 50m 이상 굴착행위는 개별 검토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수목의 제거(고사목·피해목 제외) 또는 3,000㎡ 이상의 식재는 개별 검토함. 		

13. 여주 영릉과 영릉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경기도 여주시 소재 사적 「여주 영릉과 영릉」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여주 영릉과 영릉」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

(2) 대상문화재 : 여주 영릉과 영릉(사적)

(3) 신청내용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 주요내용

- 허용기준 구역 및 도면 변경사항 없음
- 천연기념물 여주 효종대왕릉(영릉) 회양목 통합고시
- 조정사항
 - * 표준 준용하여 일부 문구 수정
 - * 허용기준 작성지침 [별표3] '허용기준 공통사항' 적용하여 공통사항 추가
 - * 행정편의를 고려한 일부 공통사항 추가 및 삭제

○ 현행(문화재청 고시 제2016-82호, 2016.09.12.)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	
5구역	○ 여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은 기본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 심의함. (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조정한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검토		
2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 최고높이 14m 이하	○ 최고높이 18m 이하	
5구역	○ 여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태양광 등),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지하 50m 이상의 굴착 행위는 개별 검토함. ○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는 개별 검토함. ○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검토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 검토함. (단, 평지붕 8m 또는 경사지붕 12m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검토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수목의 제거(고사목, 피해목 제외) 또는 3,000㎡ 이상의 수목 식재 개별 검토함. ○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14. 경복궁 장소사용허가(2023 서울라이트 광화문 빛축제)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가 ‘2023 서울라이트 광화문 빛축제’ 개최를 위하여 광화문 권역의 장소사용허가 신청한 건에 대하여 안전으로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울특별시가 ‘2023 서울라이트 광화문 빛축제’ 개최를 위하여 장소사용 허가 신청한 건에 대하여 문화유산의 보존·관리에 끼치는 영향 등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여 안전 부의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경복궁(사적) 광화문
 -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161
- (3) 신청내용
 - 사용위치 : 광화문 전면 및 후면, 광화문 월대
 - 사용내용
 - 행사명 : 2023 서울라이트 광화문 빛축제
 - * 서울시 주최 ‘2023 WINTA Seoul My Soul’ 의 연계 행사
 - 장소사용일시 : ‘23. 11. 30.(목) 08:00 ~ ‘24. 1. 26.(금) 24:00 (58일간)

장소사용기간	11.30. ~ 12.10.	12.11. ~ 12.14.	12.15. ~ 1.21.	1.22. ~ 1.26.
사용내용	구조물 및 시스템 설치	시스템 리허설	서울라이트 광화문 행사 진행 (38일간)	조명, 구조물 철거

- 시설물 설치

위치	설치목적	설치내용
광화문 전면 공장 바닥	조명 레이저쇼 진행	조명 시스템 설치(일반 조명) -공장과 이격 0.8m, 좌우 길이 각 (좌)141.5m (우)164.6m -LED바 60개, LED스트로브 68개, 안전펜스 등 *기존 설치조명 간섭 없이 바닥에 적재식 설치 *월대 위 제외
광화문 내벽 앞		조명 시스템 설치(조명타워 및 무빙조명) -내벽과 이격 1m, 좌우 길이 각 36m, 높이 4m, 너비 2m -레이어(조명타워) 128개, 빔(무빙)라이트 100개 -물탱크(4t, 32개), 물차 출입 등
		레이어 차폐 패널그래픽(사진실사) 포토존 구성 -레이어 구조물 외부 목재 패널 설치(레이어와 규격 동일)
광화문 전면 좌우 공장 끝	조명 전기 공급	발전차 배치 -좌우 각 1대(300KW)

- 신청 행사 개요

〈광화문 미디어파사드: 시공의 문〉		
기간	시간	행사내용
‘23. 12. 15.~ ‘24. 1. 21. (38일간)	평일	18:00~21:00 미디어파사드 및 조명 레이저쇼 -운영횟수: 일 3~4회(매시 정각 시작) * 신청(1월 1일) 6회 운영
	주말, 공휴일	18:00~22:00 -러닝타임: 회당 35분 -영상구성: 시그니처 미디어파사드(5분) → 조명쇼(5분) → 작품 미디어파사드(25분)
	신청	18:00~24:10 -참여작품: 광화산수도(이이남) 외 해외작품 4개
〈미디어 퍼포먼스 ‘빛의 축제’〉		
일자	시간	행사내용
‘23. 12. 31.	미정	원타서울 행사 피날레 공연 -장소: 광화문 월대 -내용: 미디어아트 및 난타 융복합 공연(미정)

보고사항

【 보고사항 】

안전번호 공능 2023-11-15

1. 효종 영릉 향·어로 및 주변 복원정비공사

가. 제안사항

경기도 여주시 소재 사적 『여주 영릉과 영릉』 내 효종릉 향·어로 및 주변 복원정비공사의 실시계획을 보고합니다.

나. 제안사유

- 효종 영릉 사적지정구역내의 변형·교란된 향·어로 정비, 이완, 기울어진 어구·수계 정비, 봉분 변형 정비 및 비각 주변 지형 복구, 기존건물 보수 및 주변 정비 등 공사계획에 대하여 보고합니다.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여주 영릉과 영릉(사적 / 1970.05.27 지정)
 - 소재지 :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영릉로 269-10
- (3) 신청내용
 - 위치 :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왕대리 901-2 일원
 - 사업내용

주요공종	사업 내용	
향·어로 해체보수	향어로 경계석 및 박석 100% 해체보수(117.76㎡), 파손돌 및 부식된 돌 선별 교체	
어구 보수 및 배수정비	어구 수계시설 정비(L=46.83m) : 어구 상단1단 석재드잡이, 터고르기 후 잔디식재(13.05㎡) 정자각 주변 터고르기 후 잔디보수(552.86㎡) 수라간 전면 박석 해체보수(25.03㎡), 수라간 전면 마사토다짐(53.85㎡) 가설로 및 가설작업장 터고르기 후 잔디식재(195.0㎡)	
봉분정비	인선왕후 봉분 곡 정비(층단각기 34.61㎡, 층단다짐 16.69㎡, 잔디 79.25㎡ 등)	
건물보수	수라간	변와보수(보토이상 해체보수 20.48㎡) 기단모서리석 4개소 교체, 기단생석회다짐 해체보수 등
	수복방	개관이상 해체보수 22.35㎡ 후 변와보수 및 부식재 교체, 부식 목부재 교체 및 벽미장 보수)
	비각	화강석장대석 상부1단 해체보수 내,외부 방전 해체보수(21.03㎡) : 내부 수제전돌 50% 교체, 외부 수제 전돌 100% 교체, 기단 주변 배수 정비(지형복구)

2. 창경궁관리소 근로자 휴게실(가설 컨테이너) 설치

가. 보고사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사적 창경궁 내 근로자 휴게실(가설 컨테이너) 설치를 위한 사항을 보고합니다.

나. 보고사유

- 창경궁관리소 근로자 휴게공간 마련을 위하여 가설 컨테이너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보고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창경궁(사적)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185
- (3) 신청내용
 -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185 / 창경궁 경내
 - 사업내용 : 가설 컨테이너 1동 설치
 - 설치규모 : 3.4m X 9.5m X 3.2m(높이)

3.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처리 보고

가. 보고사항

경기도 소재 사적 「구리 동구릉」 주변 주상복합 신축(허가변경) 등 6건에 대하여 검토를 거쳐 다음과 같이 자체 처리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나. 보고내용

문화재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구리 동구릉	경기도 구리시	○○○	<주상복합 신축(허가변경)> ○ 위치 :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701, 701-1, 701-2 (6구역/문화재구역과 420m 이격) ○ 사업내용 : 주상복합 신축(허가변경) - 대지면적: 2,234.7㎡→2,500.3㎡(265.6㎡ 증) - 건축면적: 1,564㎡→1,563.79㎡(0.21㎡ 감) - 연 면 적: 21,782.01㎡→20,460.04㎡ (1,321.97㎡ 감) - 건축규모: 2개동, 지하5층~지상17층 → 2개동, 지하4층~지상17층 (지하 1층 감소, 지상변동없음) - 최고높이: 53.8m(변경없음) - 허가된 위치에서 건축물 위치 변경 (최대 4.69m 이동) - 기준층 주동 평면 변경	허가	'23.10.23.
(사적) 서울 영희원과 송인원	서울시 동대문구	○○○	<청량리제7구역주택재개발 정비사업(변경허가)> ○ 위치 :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199 일대 (2,3구역/ 문화재구역과 5m 이격) ○ 사업내용 : 청량리 제7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허가변경) - 건축면적(기허가)6,498.7541㎡ → (변경)6,498.8010㎡(증0.0469㎡) - 연면적(기허가)111,177.9030㎡ → (변경)111,214.9418㎡(증37.0388㎡) - 지하 동전기실 및 우수저수조 위치 변경, 세대창고 반영 등으로 면적 증가	허가	'23.11.13.
(사적) 양주 은릉	경기도 양주시	○○○	비공개(군사시설관련) ※ 2022.5.23. 기 허가되었으나 허가기간 만료되어 재신청된 사항임	허가	'23.11.09.

문화재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파주 삼릉	경기도 파주시	○○○	<p><기존 공장 부지 증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뇌조리 124-88 (3구역/ 문화재로부터 293m 이격) ○ 사업내용 : 공장 부지 증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면적 : 2,836㎡ - 건축(연)면적 : 199.7㎡(199.7㎡) - 건축규모 : 1개동, 지상1층 - 최고높이 : 8m - 최대절토깊이 : 5.5m - 절토/성토 : 711.7㎡ / 53,671㎡ - 보강토 용벽(H=0~3m): 168.5m 	허가	'23.11.09.
(사적) 화성 용릉과 건릉	경기도 화성시	○○○	<p><태양광 설비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 167-94 (4구역/ 문화재로부터 280m 이격) ○ 사업내용 : 태양광 설비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면적 : 961㎡ - 설치면적 : 128.6㎡(기존 건물 지붕에 설치) - 최고높이 : 13.6m(경사지붕) 	허가	'23.11.09.
(사적) 파주 삼릉	경기도 파주시	○○○	<p><하수관로 정비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장곡리 봉일천리 일원 (1~3구역/ 문화재로부터 180m 이격) ○ 사업내용 : 하수관로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수관로, 맨홀펌프 신설, 배수설비 정비 - 차집관로 신설 및 증설 등 <p>※ 2020.08.06. 기 허가되었으나 허가기간 만료되어 재신청된 사항임</p>	허가	'23.11.14.